

2023년 『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』 참여기업 모집공고

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3년 『조달물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5월 2일

대구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☐ 추진목적

- 지역의 우수한 조달물품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

☐ 사업내용

-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기술인증, 품질인증, 시험인증 획득 등을 위한 인증 지원
-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

2. 지원내용

☐ 지원대상

-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제조업체

☐ 지원기간

- 협약일로부터 24년 2월 10일까지

□ 지원분야

○ 지원 분야 내 단일 또는 패키지 신청 가능

① 우수조달물품 컨설팅 지원

-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
- 신청기업에 최적화된 컨설팅 전문기관과 매칭지원
- 기업당 최대 12,000천원까지 컨설팅비용지원

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(부가세 제외)

② 인증 지원

- 사업 공고일 이후 획득한 국내의 인증 및 시험성적 관련 비용지원
 - 기술인증 : 신제품인증(NEP), 신기술인증(NET)
 - 품질인증 : 성능인증(EPC), 우수재활용(GR), 환경표지(환경마크), K마크, 우수품질 소프트웨어(GS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품질보증조달물품, 소재·부품 신뢰성 인증, ICT 융합품질인증, 공공기관용 보안인증(TTA) 등

- 시험인증 :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획득

- 기업당 최대 4,0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지원

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(부가세 제외)

③ 지식재산권 지원

- 사업 공고일 이후 출원한 국내 특허창출을 위한 집중 지원
 -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 작성 지원
 - 신속한 권리화를 위한 우선심사 및 거절이유 대응 지원

- 기업당 최대 2,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지원

※ 지원금의 10% 이상은 참여기업이 현금으로 자부담 (부가세 제외)

3.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□ 지원제외 대상(접수마감일 기준)

-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인 경우
- 기업이 부도인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
-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-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-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
-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-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부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기업

□ 유의사항

- 우수조달 컨설팅 지원은 별도 선정된 수행기관 Pool에서 매칭 후 과업 수행 (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은 수행기관 제한없음)
- 사업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체결된 협약 취소함
- 사업 선정이후, 중도 포기 또는 협약 취소되거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민·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향후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3년간 지원 불가함

4. 추진일정



※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신청접수

- **공고기간** : '23. 5. 2.(화) ~ 5. 31.(수) [30일간]
- **접수기간** : '23. 5. 22.(월) ~ 5. 31.(수) [10일간]

※ 신청마감일(5/31(수), 18:00)까지 제출서류 모두 도착 완료된 건만 접수

□ 제출서류

구분	제출자료명	비고	
1	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	1부	붙임1
2	적정서 확인서	1부	붙임2
3	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	1부	붙임3
4	사업자등록증	1부	
5	중소기업확인서(https://sminfo.mss.go.kr)	1부	
6	공장등록증(공고일 이후 발급)	1부	해당시
7	4대보험가입자 명부(공고일 이후 발급)	1부	
8	2021년, 2022년 표준재무제표증명 ▶ 재무제표가 없는 창업기업, 개인기업 등은 부가가치증명원으로 대체가능	각1부	
9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공고일 이후 발급)	1부	

※ 서류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(PDF), 한글파일(HWP) 모두 E-mail 제출

□ 신청방법

- 아래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를 다운받은 후 E-mail 접수
 -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
 - 대구하나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hittp.org)
- E-mail 접수처 : hibig51@dgtp.or.kr

※ 접수 후 유선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부담

□ 문의처

- (재)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허준석 책임연구원 (Tel. 053-757-3784)
- (재)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배성현 선임연구원 (Tel. 053-757-3788)